

## 증권대여(대차)중개거래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증권대여(대차)중개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대차거래는 고객에게 주식을 대여하여, 해당 주식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취하는 거래입니다.

###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발생 가능한 불이익 등)

- 대여주식 매도 및 대여회수상환신청 가능시간은 정규장 시간입니다.
- 주식 대여 시 보전되지 않는 권리의 경우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리콜(상환요청)을 함으로써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2)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리콜(상환요청)을 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3) 공개매수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행사가가능시간 3 영업일 이전에 대차 주식을 상환요청하셔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의 경우

대여한 주식에 유상증자가 발생하여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이틀 후(T+2)까지 대여자에게 입고됩니다. 이에 신주인수권

증서의 매도 및 입출고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여 상장일 당일 즉시 매도 및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장 주식 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종목(거래정지종목,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주식대여로 인한 대여소득(대여수수료)은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개별 소득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여주식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myasset.com](http://www.myasset.com)) 또는 **고객센터**(1588-2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요

- 1. 개요
  - 대차거래는 고객에게 주식을 대여하여, 해당 주식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취하는 거래입니다.
  - 대여자는 주식을 대여하여 이용료를 받고 차입자는 증권 조달을 하여 인도부족 결제 불이행을 예방하거나, 차익/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수행합니다.

## 대여거래 신청 및 해지

- 2. 대여거래 신청 및 해지
  - 가. 대여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여거래 약정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대여거래 약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 대여거래 약정을 신청하면 해당 계좌가 보유한 현금주식은 모두 대여 가능 수량으로 처리되어 차입자와 대차계약이 발생한 경우 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 라. 위탁계좌에서 대여거래 약정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종목은 대여거래 약정이 불가하거나 제한됩니다.
    - 약정제한 계좌: 사고등록계좌, 반송등록계좌, 연계신용약정계좌, 랩약정계좌, 실명 미확인 계좌 등
    - 대여 불가종목: 질권, 압류주식, 선물대용지정 주식, 보호예수 주식, 신용 및 담보대출주식, 대여제한 신청주식 등
  - 마. 대여잔고가 남아있는 경우 해지신청이 불가하며, 대여상환 또는 대여주식 매도 결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대여체결

- 3. 대여체결
  - 가. 대여거래 약정 후에는 계좌의 보유주식 잔고는 모두 대여 가능수량으로 관리되며, 당사에 신청한 계좌의 잔고 범위 내에서 대여거래가 발생합니다.
  - 나. 대여체결은 차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행이 됩니다.
    - 차입자가 요청한 수량을 회사가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대여체결수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계좌별로 배정합니다.
  - 다. 배정되는 우선순위는 대여가능수량이 많은 계좌, 대여약정 신청일이 빠른 계좌, 계좌 개설일이 빠른 계좌 순서로 배정되며 회사에서 대여자 및 대여가능잔고를 판단하여 배정수량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라. 대여체결잔고가 있어도 현물잔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잔고평가 되며, 주문 가능수량 및 잔고 평가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마. 대여체결이 발생되면 잔고조회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여체결 상황

### 4. 대여체결 상황

- 가. 대여거래 약정 해지시 대여거래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나. 대여잔고에 대해서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대여상환 신청 화면에서 종목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상환 신청시 해당 종목의 대여수량 전체가 상환됩니다.
- 다. 대여제한 종목 등록시 기존 대여체결 수량을 제외하고 대여 가능종목에서 삭제됩니다.  
(대여상환 완료 후 모든 수량 대여제한 가능)
- 라. 차입자가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대여잔고는 자동상환 처리됩니다.
- 마. 대여상환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잔고 매도 및 출고

### 5. 대여잔고 매도 및 출고

- 가. 대여잔고는 정규장 시간 내에서는 일반잔고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하며 현금잔고, 대여잔고 순으로 체결됩니다.  
- 대여잔고 매도시에는 자동상환 처리됩니다.
- 나. 대여잔고 출고는 불가하며, 대여상환(3영업일 소요) 완료 후에 출고 가능합니다.  
단, 거래정지 종목 등의 경우 상환 요청 시 거래 재개 시점으로부터 T+2(결제일)까지 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여이용료

### 6. 대여이용료

- 가. 대여잔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일별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text{일별이용료 금액} = \text{대여잔고} * \text{해당 종목의 전일종가} * \text{대여이용료율} / 365(\text{원미만 절사})$$
- 나. 대여이용료율의 기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수수료율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대여이용료율은 통상 연 0.01% ~ 5.0% 수준에서 종목, 수량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대여주식의 희소성 및 시장상황에 따라 연 5.0% 초과에서도 거래될 수 있습니다.
- 다. 발생한 이용료는 매익월 15일에 지급합니다. (휴일시 익영업일로顺延)
- 라. 대여이용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세(20%) 및 주민세(2%)는 대여이용료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당해 발생한 이용료 합산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 금액은 환급 처리합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개별 소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 권리처리

### 7. 권리처리

가. 회사는 대여잔고에서 발생하는 배당, 증자 등의 권리를 아래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에 차입자에게 상환청구하며, 상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여자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지급합니다. 단, 유상증자 권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여수량 \*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격)’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2) 무상증자: 신주의 상장일에 해당 대차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단, 무상증자 권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여수량 \*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격)’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3) 배당주: 신주의 상장일에 해당 대차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단, 배당주 권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여수량 \* (배당신주의 최초 상장일의 종가 \* (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상장일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4) 현금배당, 단주대금 등: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대여주식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나. 대여주식에서 발생하는 유, 무상증자, 배당 등의 권리는 대여수량과 대여 후 잔고수량에 대해 각각 계산되므로 대여 전 일반 잔고수량에 대해 산정하는 수량 또는 단수주 대금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대여잔고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마. 권리분 공매도는 불가합니다.

바. 대여자는 매수청구 및 의결권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여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행사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대여회수를 신청하고, 매수청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대여회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타

### 8. 기타

가.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해당 주식의 임원의 주식 대여시 소유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 주식대여 약정 고객 계좌에 대해 법원명령, 압류 등의 사유로 계좌에 사고등록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남아있는 대여잔고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여상환 처리합니다.

다. 대여 관련 거래시간

## 증권대여(대차)중개거래설명서(2024. 1월 현재)

대여 약정등록: 평일 7시 30분 ~ 22시

대여주식 매도 가능시간: 정규장(9시 ~ 15시30분)

대여상환 가능시간: 정규장(9시 ~ 15시30분)

라. 대여일수는 한편넣기(초일산입 말일불산입)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환일은 대여이용료 산정일에서 제외 됩니다.

마. 대여발생, 상환, 대여이용료 지급 등은 알리미서비스 통보지로 발송됩니다.